

## 카드부정사용보상보험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(기타) - 기타
2. 보험종목의 명칭 : 카드부정사용보상보험
3. 보험의 목적
  - 가. 피보험자의 비용손해  
: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(부정사용)으로 인한 금전 손해
  - 나. 동산
4. 보험기간
  - 가. 보험기간: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나. 보험료 납입주기 : 일시납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  - 가.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7. 기타
  - 가.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- 나.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특약이 부가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   - ① 상품다수구매자(피보험자)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보장내용(불완전판매 우려가 적고 보험사고 입증 및 보험금 지급절차가 단순한 상품)으로 설계한다.
    - ② 보험료는 계약자(상품판매자)가 전액 부담\*한다.  
\* 보험료 부담이 피보험자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인수함
    - ③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주요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피보험자 확인\*을 받은 경우에 인수한다.  
\* 가입 전 설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입후 설명 및 확인함
  - 다. 단체보험계약에 한하여 인수한다.
  - 라. 단체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    - ① 신규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(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 부가 서비스 등)의 경우, 아래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인수한다.

- 가) 카드 가입신청서에 보험가입에 관한 안내 문구를 명시하고,
- 나) 카드회원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동의 또는 확인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(체크박스)를 표기함

[카드 가입신청서 안내 문구 예시]  
 XX카드는 카드회사가 대표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며,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권리, 의무는 카드회사가 행사합니다.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XX카드가 부담하며,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카드회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- ② 기존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(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 부가서비스 등)의 경우, 전화, 이메일, 문자메세지,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내용을 카드회원에게 안내하는 경우에 인수한다.

마.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관련사항

- ① 특약의 적용근거 :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② 특약의 적용범위 :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 - 가)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 - 나)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- ③ 기타
  - 가)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  - 나)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Chubb. Insured.™